

#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7조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「고성 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」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.

2026년 7월 일

##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

1. 용역명 : 고성 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
2. 용역내용

- 기초자료 조사 1식(자연조건, 입지여건, 관련계획, 기존현황 등)
- 현지조사 1식(지형 및 수심측량,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, 재료원, 어업권 등)
- 현지조사 1식(지형 및 수심측량,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, 재료원, 어업권 등)
- 수치모형실험 1식(파랑변형, 해빈류, 표사이동, 해안선 변형, 부유사 확산 등)
- 연안침식 원인분석, 기본계획 재검토, 기본 및 실시설계 1식
- 관련 인·허가 검토 및 협의 1식(문화재, 해역이용협의 등)

3. 사 유

상기 용역은 태풍·너울성 고파랑에 의한 해안침식, 배후도로·호안시설 붕괴·침수 등 발생하고 있는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해변과 배후시설물,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안재해방지 및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공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안개발, 해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면배치계획, 표준단면 및 공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 수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용역으로 설계부분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

동 설계 용역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수심측량·수치모형실험, 지반조사 등의 기술용역은 조사 과정 및 결과를 유기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, 지속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특수·특정 기술용역에 해당함.

지반조사 등 기술 용역을 분리 발주하여 시행할 경우 설계 용역사에 자료 제공 지연 및 업체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해되고 설계 성과 부실 시, 책임 이원화에 따른 하자책임 불분명 등으로 분쟁 소지가 있음.

이에,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지형 및 수심측량, 지반조사, 수치모형실험 등 기술용역을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 (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) 제1항 제4호에 따라 설계용역에 포함하여 발주하고자 하며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에 따라 그 사유를 사전에 공표하고자 함.

#### 4. 문의사항

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(☎033-520-6256,6255, 장성욱·김연섭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